

2018년도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사업 세부추진계획 공고

『2018년도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사업』 세부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자전거·해양레저장비 관련 국산화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2. 8.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개요

- 고부가가치 자전거·해양 레저장비 분야의 기술개발과 맞춤형사업화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 경쟁력 확보 및 관련 산업 육성
- 사업 예산 : 21.76억 원 (계속과제 포함)
- 사업 내용

| 구분 | 내용 |
|--------|---|
| 기술개발 | 자전거·해양 레저장비 및 관련 부품·소재를 제조하는 중소기업이 주관이 되어 수행하는 기술개발 과제 |
| 맞춤형사업화 | R&D 성공 후 사업화 되지 않은 기술에 대해 기술사업화 진단을 통한 사업화 기획, 시장검증 및 비즈니스모델(BM) 개발 등 맞춤형사업화 지원 |

2. 사업 세부 계획

① 기술개발 지원

1. 지원 대상

주관기관

- 제조업(표준산업분류 제10~제34류)을 영위하는 공장등록증 보유 중소기업
 - ※ 중소기업의 범위 : 중소벤처기업부(<http://www.mss.go.kr>) 알림소식 → 법령정보 → 중소기업범위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공장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으로 갈음
 - ①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제조업체
 - ② 창업 또는 기술보육센터에 입주 중인 업체
 -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2항에 따른 소기업

참여기관

-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참여기관으로 참여 가능함

2. 지원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신청된 세부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 중소기업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 → 지원고제 검색” 및 티기관 공개자료(www.ntis.go.kr)의 “국가 R&D사업관리 → 유사고제” 등을 활용하여 중복성 검토 후 접수 요망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

(보고서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부도 또는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이거나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이하인 경우, 자본전액잠식,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 또는 “부적정”인 경우(업력 2년 미만인 경우 적용하지 아니함)

※ 부채비율 = (부채총계/자본총계) × 100%,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 × 100%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총괄책임자는 신청과제에 참여율을 30%이상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며, 잔여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첨부 1에 따른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3. 지원 범위

지원범위

- 자전거·해양 레저장비 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품질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과제를 대상으로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기술개발 분야 | |
|----------------|--------------|
| 자전거 레저장비 | 해양 레저장비 |
| 자전거 및 관련 부품·소재 | 해양 레저장비 전 분야 |

※ 해양 레저장비의 범위는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조(정의) 참조

4. 지원 내용

가. 지원 내용

정부보조금 지원

○ 지원기간 및 한도

| 분야 | 지원기간 | 지원한도 |
|----------|-------|------------------------|
| 자전거 레저장비 | 2년 이내 | 연 2억원 이내(과제당 총 3억원 이내) |
| 해양 레저장비 | 3년 이내 | 연 3억원 이내(과제당 총 8억원 이내) |

○ 지원비율 : 총 사업비의 75%이내(연차별 지급)

| 기술개발 형태 | 보조금 지원비율 |
|-------------------------------|--------------|
| 공동기술개발 (산·학, 산·연, 산·학·연, 기업간) | 총사업비의 3/4 이내 |
| 단독 기술개발 | 총사업비의 1/2 이내 |

○ 공모유형

- 자전거 레저장비 분야 : 자전거 분야 자유공모
 - 개발하고자 하는 자전거 레저 기술을 자유롭게 도출하여 신청
- 해양 레저장비 분야 : 해양 레저 전 분야 자유공모
 - 개발하고자 하는 해양 레저 기술을 자유롭게 도출하여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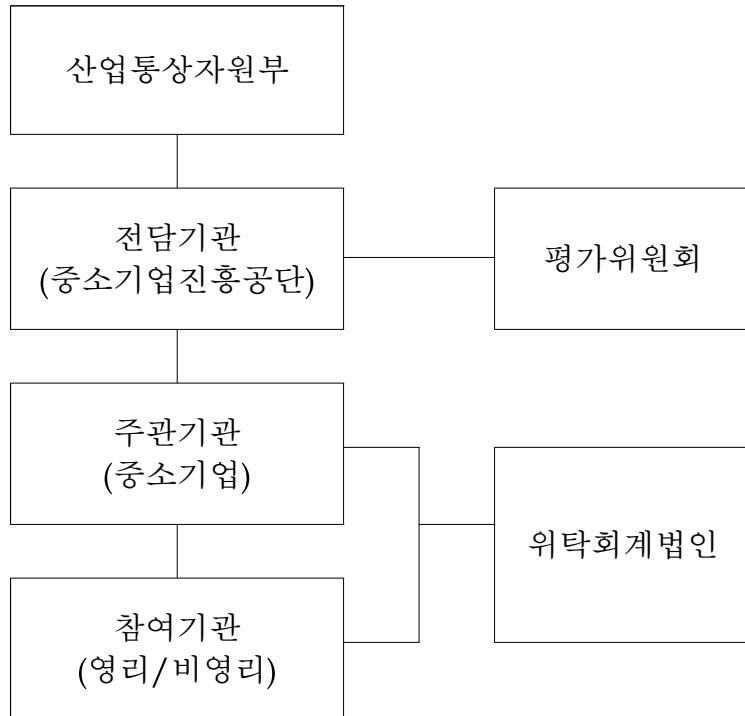
○ 정액기술료 징수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 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경우 기술료 징수
 - 정액기술료 : 총 지원 정부보조금의 10%
 - 징수기간 : 5년 이내

민간부담금(정부 이외의 자가 부담하는 비용)

-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보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연차별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40% 이상으로 함

-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신규 채용 인력 인건비 현금 지원
 - 중소기업이 과제수행을 위해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의 연구원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채용 연구원의 사업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만큼 현금 지원
- 추진체계



나. 지원절차

- 신청서 접수 → 평가위원회* 개최 → 신규과제 및 사업자 확정 → 협약체결 및 보조금 지급
 - * 평가위원회는 대면평가로 진행되며 필요시 전담기관이 사전 현장점검을 실시 할 수 있음

5. 평가기준 및 지원 우선순위

가. 평가기준

- 평가지표 및 배점 : 기술성 및 개발능력(50),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50)

| 평가항목 | 세부 항목 |
|-----------------------|--|
| 기술성 및 개발능력 (5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준비성 ▪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 개발 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 ▪ 기술 및 디자인의 혁신성과 차별성 ▪ 기술개발 추진 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 ▪ 총괄책임자 및 연구팀 능력 ▪ 기술적 파급효과 |
|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5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용화 가능성 ▪ 시장 진입 가능성 및 성장성 ▪ 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 ▪ 사업화 연계 계획의 명확성 |

나. 지원 우선 순위

- 신청과제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 과제”로, 60점 미만인 과제는 점수 미달에 의한 “지원제외”로 구분
- 단, 60점 이상인 과제이더라도 각 분야별 종합평점이 높은 순위에 따라 지원되며, 이에 따라 종합평점이 상대적으로 낮은 과제는 경합탈락 될 수 있음

다. 우대 조건

- 부품소재전문기업(3점)
-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선정한 세계일류상품 관련기술을 일류상품 생산업체가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3점)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2점)
-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 우수디자인상품(GD)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일자리 안정자금 수혜기업인 경우(3점)

※ 가산점 부여기준은 접수 마감일이며, 인증기업은 인증서 사본 제출

※ 평가위원회 평가 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라. 보안과제 운용 관련 사항

- 수행성과가 대외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 재산적 가치의 손실이 예상되어 일정 수준의 보안조치가 필요한 과제의 경우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에 따라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함.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일반/보안)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 개발과 관련되는 과제
 - 국방·안보관련 기술로 전용 가능한 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해 지정된 국가 핵심기술과 관련된 과제
 - 외국의 기술이전 거부로 국산화가 추진 중 이거나, 미래의 기술적·경제적 가치 및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술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과제
 - 지식재산권 확보와 관련하여 기술유출 가능성이 있는 과제

6. 사업 일정

- 2018년 2월 08일 ~ 3월 09일 사업공고
 - 2018년 2월 13일 ~ 3월 09일 전산등록 및 신청서 접수
 - 2018년 3월 15일 ~ 3월 16일 신규평가위원회 개최
 - 2018년 3월 20일 신규평가결과 통보 및 확정
 - 2018년 3월 26일 ~ 3월 30일 협약체결 및 보조금 지급
 - 2018년 4월 02일 사업시작

※ 일정은 신청규모, 진행 여건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7. 관련규정

- 동 사업을 기획·평가·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을 적용함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② 맞춤형사업화 지원

1. 지원 대상

- 자전거·해양 레저장비(부품·소재 포함) 관련 R&D 성공판정 기술 및 특허 등록 기술 중 사업화 추진(매출발생, 양산화)이 안 된 기술보유 중소기업
 - ※ 지원 대상에 개인용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자이로타입(1월, 2월), 전동 스케이트 보드(2월, 4월),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포함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지식서비스업,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 정부 R&D 지원 후 성공판정을 받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신청기업은 이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에서 정부부처 지원 과제임을 확인한 후 신청. 단, 해당 기술이 신청일 기준 양산, 판매 등 사업화가 진행된 경우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접속 → 오른쪽 상위의 “검색” 클릭 → “과제상세검색” 클릭 → 사업명, 과제명, 과제수행기관명 등을 입력하고 검색 → 해당과제가 검색될 경우 정부지원 R&D 과제임
- ※ 정부 R&D 성공판정 기술임에도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성공판정 공문을 별도 제출
- 특허등록 기술에 대하여 안정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는 권리(소유권 또는 전용실시권)를 보유한 기업. 단, 권리가 개인기업인 경우에는 대표, 법인기업인 경우에는 법인이 보유하여야 하며, 신청일 기준으로 사업화가 진행된 경우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사업(舊. 자전거·해양 레저장비 기술개발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최종평가에서 “성실수행” 이상 판정을 받은 기업(과제 주관기관에 한함)

2. 지원 제외 대상

- 사업에 참여하는 자(신청기업, 대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 · 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 · 법정관리 · 기업회생신청 · 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및 휴·폐업중인 기업
 -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
 - 신청기업이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 첨부 1에 따른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3. 우대 사항

- ICT 용 · 복합 기술 제품으로 신청한 경우(3점)

- 일자리 안정자금 수혜기업인 경우(3점)

※ 평가위원회 평가 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4. 세부 지원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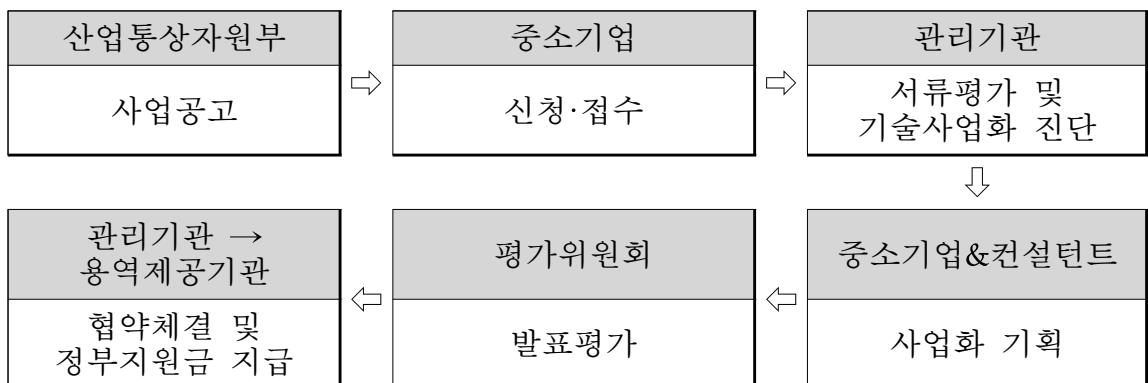
□ 시장 검증

- 대상 : 사업화 기획* 완료 후 발표평가를 통해 선정된 기업
 - ※ 사업화 기획 : 기술사업화 진단을 통해 “사업화 유망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추진 로드맵 수립 및 연계지원 코칭 지원
 - 지원내용 : 양산을 위한 투자 의사결정 이전에 시장에 대한 사전 검증 지원 등(아래 세부내용 참조)
 - 정부지원은 75% 이내로 최대 5,000만원, 기업부담은 25% 이내
- ※ 예시 : 총 사업비 6,667만원 조성 시 정부지원금 5,000만원 + 기업부담 1,667만원

| 구분 | 세부 내용 |
|-------|---|
| 시장 검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제품성능, 품질, 신뢰성 평가 • 국내외 인증획득, 공인기관 성적서 발급 • 출시제품 제작비(금형제외) • 시험분석, 성능검사, 분석료 등(기기·장비와 부수 기자재 구입용도 집행은 불가) • 시장성조사, 제품디자인, 포장/패키지디자인, CI·BI개발, 브로셔, 홍보물 제작 등 • 전시회 및 수출상담회 참가비용 • 기업, 연구소 등 외부기관 장비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

※ 선정기업은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용역 제공기관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소요비용은 협약을 통해 조성된 사업비에서 관리기관이 용역 제공기관에 지급

- 지원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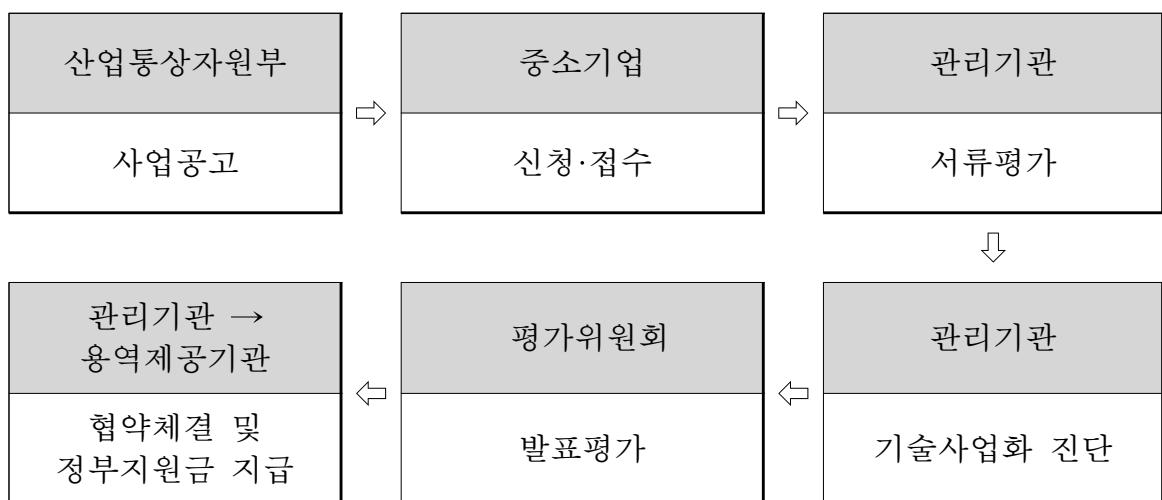
□ 비즈니스모델(BM) 개발 지원

- 대상 : 비즈니스모델(BM) 개발을 희망하는 기업
- 지원내용 : 자전거·해양 레저장비 산업에 기술과 新서비스 요소를 융합하여 해당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
- 정부지원은 75% 이내로 최대 3,500만원, 기업부담은 25% 이내

※ 예시 : 총 사업비 4,667만원 조성 시 정부지원금 3,500만원 + 기업부담 1,167만원

| 구분 | 세 부 내 용 |
|----------|--|
| BM 개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적분석, 지식재산권 심층분석, 시장조사, 해외사례, 사업화로드맵 등• 예상고객분석, 목표시장분석, 상용화전략, 시장진입방안, 판로확보 등• 사업모델 구체화, 서비스 설계, 연계성 검증 등 |

- 지원절차



5. 사업 일정

- 2018년 2월 08일 ~ 3월 09일 사업공고
- 2018년 2월 13일 ~ 3월 09일 전산등록 및 신청서 접수
- 2018년 3월 14일 ~ 3월 15일 서류심사

- 2018년 3월 19일 ~ 5월 11일 기술사업화 진단 및 기획 (BM개발은 기획 생략)
- 2018년 5월 15일 ~ 5월 16일 발표 평가
- 2018년 5월 21일 ~ 9월 21일 시장검증 및 BM 개발

※ 일정은 신청규모, 진행 여건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6. 기타 공지사항

- 당해 연도 1개 맞춤형사업화 과제만 신청가능하며,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사업 운영지침에 따름

3. 사업신청

- 신청절차 및 기한

- (1단계) 접수번호 발급 및 신청서 작성

- 방법 : 중진공 홈페이지(지원사업-기타-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
 - 기한 : 2018. 2. 13(화) ~ 3. 9(금) 18시까지

- (2단계) 사업신청서 원본 제출

- 방법 : 우편 제출

※ 접수처 :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430 중소기업진흥공단 5층 창업기술처

※ 우편물 표지에 사업명(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사업 기술개발 또는 맞춤형사업화), 신청과제명, 접수번호 등을 반드시 기재할 것

- 기한 : 2018. 2. 13(화) ~ 3. 13(화) 18시까지(도착분에 한함)

제출 서류

| 구분 | 내용 |
|--------|--|
| 기술개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신청서 10부(원본 1부 포함)- 주관기관, 참여기관 사업자등록증(사본) 각 1부-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원본) 각 1부- 수행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원본) 각 1부-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원본) 각 1부- 우대사항 증빙서류(사본) 각 1부- 수행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원본) 각 1부- 주관기관, 참여기관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각 1부 (직전년도 결산이 안된 경우 그 직전년도로부터 2년, 비영리기관 제외)- 주관기관, 참여기관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비영리기관 제외)- 공장등록증 사본, 기업부설연구소 사본, 감사보고서 등(해당시) <p>※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국세 납세 증명서는 국세청(홈텍스)에서 발급한 원본을 제출해야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p> |
| 맞춤형사업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기술사업화) 사업신청서 1부- 개인(신용)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 조회 동의서 원본 1부- 기업(신용)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 조회 동의서 원본 1부- 고객정보 활용 동의서 원본 1부-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주민번호 뒤 여섯 자리 삭제 후 제출, ex. 800101-1xxxxxx)- 최근 3개년 재무제표 각 1부 (국세청 발급자료)- 정부 R&D 성공판정 공문 1부 또는 특허등록 원부 1부- 우대사항 증빙서류(사본) 각 1부 |

4. 문의처

사업신청 및 접수방법 문의

-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기술처 김종수, 윤유진 (☎ 055-751-9854, 9858)

동 사업은 경륜 · 경정사업 수익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첨부 1**지원제외 대상 업종****지원제외 대상 업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을 지원대상 업종으로 하되, 아래 업종은 지원대상 제외

| 업종 분류 | 품목코드 | 용자 제외 업종 |
|---------------------|----------|---|
| 제조업 | 33402中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
| | 33409中 |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 건설업 | 41 ~ 42 | 건설업(단, 산업플랜트 건설업(41225), 폐기물처리 및 오염방지 시설 건설업(41224), 조경건설업(41226), 배관 및 냉난방공사업(42201),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42202), 방음 및 내화 공사업(42203), 소방시설 공사업(42204), 전기 및 통신공사업(423)은 지원가능 업종) |
| 도매 및 소매업 | 46102中 | 담배 중개업 |
| | 46331, 3 | 주류, 담배 도매업 |
| | 4722中 | 주류, 담배 소매업 |
| 숙박 및 음식점업 | 5621 | 주점업 |
|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 5821中 |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금융 및 보험업 | 64 ~ 66 | 금융 및 보험업 |
| 부동산업 | 68 | 부동산업 |
| 전문서비스업 | 711~2 | 법무,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
| | 7151, 2 | 회사분부, 비금융 지주회사 |
| 수의업 | 731 | 수의업 |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84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
| 교육서비스업 | 85 | 교육서비스업(단,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8565), 온라인 교육학원(85504) 중 기술 및 직업훈련교육은 지원가능 업종) |
| 보건업 | 86 | 보건업 |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9124 | 갬블링 및 베팅업 |
| 협회 및 단체 | 94 | 협회 및 단체 |
| 가구내 고용 및 자가소비생산활동 | 97 ~ 98 |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
| 국제 및 외국기관 | 99 | 국제 및 외국기관 |